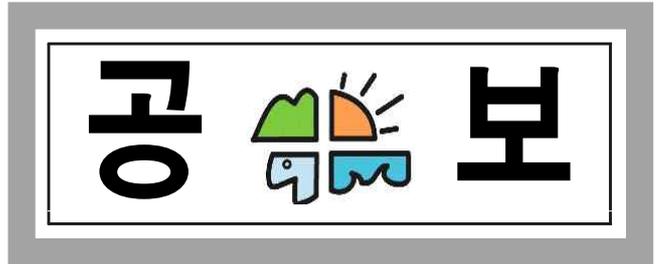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71호 2013년 5월 1일(월)

공 고

-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..... 2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청사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내·외 보안 및 각종 사건·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안전은 물론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방법용 CCTV 설치함에 있어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5월 1일

속 초 시 장

1. 설치목적

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청사 내·외 보안 및 각종 사건·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안전은 물론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용 CCTV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내용 : 청사 방법용 CCTV 설치
- 나. 설치대수 : 4대(실내 3대, 실외 1대) 신설
- 다. 설치장소 : 속초시 수북로 46(평생교육문화센터 청사 내·외 4개소)
- 라. 촬영범위 및 시간 : 청사 내(1층 출입구 1대, 2·3층 복도 각 1대)
청사 외(센터 뒤편 1대) 각 24시간 촬영
- 마. 영상저장 : 30일 이내
- 바. 관제장소 : 여성가족과 평생교육문화센터 사무실(1층)
- 사. 담당부서 : 평생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운영팀(☎033-639-2528)

3. 공고기간 : 2013. 5. 1. ~ 2013. 5. 21.(21일간)

4. 근거법규

- 가.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5조(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나. 『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』 제23조(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)
- 다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
- 라.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(행정예고)
- 마. 『행정절차법 시행령』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제출기간 : 2013. 5. 1. ~ 2013. 5. 21.(21일간)
- 나. 제출방법
 - 우편 :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46(우편번호 217-060)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
 - 전화 : 033-639-2528
 - 팩스 : 033-639-2464
- 다. 제출처 :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
- 라. 의견제출 내용
 - 행정예고사항에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의견제출자의 성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 - 기타 필요사항
- 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붙임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서식 1부.

